

목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의안 번호	15
----------	----

1. 개정이유

- 도시의 개발 및 여건의 변동에 따른 학교용지의 장단기 수급과 도시계획(변경)안을 입안하는 과정에 전문인의 필수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회의의 속기록 보존 등 보완 조치의 근거를 마련코자 함에 있음.

2. 개정내용

-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중 당연직 위원에 교육청 관계자를 추가 보장(안 제2조 제3항)
- 회의록 작성을 위해 위원회 회의개최시 회의록은 속기록으로 작성하는 규정을 신설(안 제38호 제3항)

3. 검토의견

- 도시계획은 도시의 주거기능·상업기능·공업기능 등이 상호조화를 이루어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수립·집행되고 있는 바
- 최근 도시개발의 여건 변동시 새로운 대단위 주거단지(아파트 등) 도시계획(변경)안을 입안과정시 학교부지 수급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구성을 당연직으로 교육청관계자 참여시키며
- 또한 회의진행의 정확한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속기록으로 작성하는 조항을 신설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